

[서식 예] 미성년후견 종료시 관리계산기간 연장 허가 청구

미성년후견 종료시 관리계산기간 연장 허가 청구

청 구 인 ○ ○ (전화)

주민등록번호

주소

사건본인 ㅇㅇㅇ

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

주소

등록기준지(국적)

청 구 취 지

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재산관리계산을 하는 기간을 2014. 00. 00.까지 연장함을 허가한다.

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- 1. 사건본인에 대하여 2013. 00. 00. ○○법원 2013느단0000호로 미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, 미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.
- 2. 사건본인은 2013. 12. 31. 성년이 되었으므로 미성년후견이 종료되었습니다.
- 3. 청구인은 2014. 1. 31.까지 사건본인의 재산관리계산을 해야 하지만 사건본인의 재산이 다액이고, 부동산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 법정기간 내에 이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.



4.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.

첨 부 서 류

1.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(사건본인)	각 1통
2. 주민등록등본 (사건본인)	1통
3. 기타(소명자료)	○통

2013 . 0. 0.

위 청구인 〇 〇 〇 (인)



관 할 법 원	※ 아래(1)참조	관련 규정	※ 아래(2)참조
비용	 인지액: 사건본인 수×5,000원(☞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) 송달료: 청구인수×3,700원(우편료)× 10회분 		
불복방법 즉시항고(가사소송법 제43조)			

※ (1) 가사소송법 제44조

4. 입양, 친양자 입양 또는 파양에 관한 사건은 양자·친양자의 주소지 또는 양자· 친양자가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

※ (2) 민법 제957조 (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)

- ①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때에는 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1개월 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계산은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참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.